

であるは、日子の一つには

등록번호	기획예산실-1033
등측단오	0
기안일자	2018. 09. 13.
등록일자	2018. 09. 13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	주무관	예산 담당	기획예산실장	부구청장	구청장	
					2018. 9. 13.	
ŀ						
	협 조					

2019 「동河 지치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시업」 시범운영 (앤



연수구 기획예산실 -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('19년) 이전 -

2019 「동(洞) 자치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시입」시범운영 (앤

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!

- ❖ (목표) 지역문제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주민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「참여 민주주의」와 「풀뿌리 재정민주주의」 실현
- ❖ (방향) 하나의 동이 주민참여예산의 단위가 되어 현안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, 「참여·상향적인 동 중심의 참여예산제」시행

┃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) 개정 ('18.3월 개정)
- 동법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 ('18.9월 공포/ '19시행)
- 행정안전부,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('18. 5월)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

그간 운영상 문제점

- 소규모 민원사업 중심의 사업공모 및 심사위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 미흡
 - (원인) 구민 참여의지 부족, 이를 뒷받침하는 참여재정과 참여시스템 미비
- 읍,면,동 소단위 자치분권 흐름에 역행
 - 「동 단위의 주민참여 예산기구」가 없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마을 단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제도적 제약

구 분	위원수	문 제 점
구 주민참여위원회	30명	민원사업 위주의 공모 및 심사로 한정
동 주민참여위원회	(폐지)	<u>마을단위의 실질적인 주민사업 참여 부재</u>

○ 법령상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주민 참여절차가 보장되어 있어 예산 편성 후 사업집행·평가 등「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」는 제도적으로 미흡

Ⅲ 추진전략

- 민선7기 연수구 핵심 재정과제 -지방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⇒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



추 진 방 향

주 요 추 진 과 제

주민의 참여범위 확대

주민의 실질적

참여 보장 및

소통 강화

- 예산편성 방향설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화⇒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
-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참여 확대
 ⇒ 1억원이상 신규사업 "주민 의견서" 작성
-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참여 확대
 - ⇒ 참여예산 <u>배정</u>→ 편성, 집행, 평가
 - ⇒ <u>제안사업자는 "**민간공사감독관**"</u>으로 선정

○ 동단위 「**동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제**」도입 운영 ⇒ **동 실링예산 배정** (주민세 구세분 95억)

- 「**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**」 운영 시범 운영
 - ⇒ 동장(협의회장)이 1회성으로 한시 운영
 - → 조례 개정 후,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민간 위원장이 **주민주도형**으로 본격 운영
- 제안사업은 주민총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
 - ⇒ 주민총회원 500명 이상 확보 투표(50점)
 - ⇒ 온라인 투표(50점)
 - ⇒ 마을화합을 위해 주민총회는 행사성 총회로 개최
- 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 확대
 - ⇒ 주민참여사업 "**민간공사감독관제**" 운영
- 주민의 사업공모에 대한 피드백 강화
 - ⇒ 사업 제안자에게 "**적격성 검토 결과**" 통보
 - ⇒ 제안사업은 구 사업부서에서 법령, 지침에 맞춰 "**사업계획서 컨설팅**" 확행
- 주민참여의 대표성 제고
 - ⇒ 지역대표(각급단체장), 시민단체, 사회적 약자 포함
 - ⇒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대표성을 감안 구성
-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**(엠보팅 프로그램)**

□ 동[洞]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추진 체계도



Ⅴ 운영개요

	추진과제	운영 개 요		
	1.	• 실링금액: 주민세(재산종업원분) 전액 95억원 (2017년 징수액)	 주민이 납부한 세금 전액 ⇒ 주민자치재원으로 환원 주민자치, 생활불편해소, 문화·예술행사 등 사용 	
제도 정비 (준비	주민참여예산 실링 편성	·동 실링: 55억원 → 본예산(13억원) + 추경(42억원) ·동 포괄 실링: 24.5억 (다년도·대규모 사업) ·구 실링: 15억원 ·청소년 사업 : 0.5억원		
단계)	2. 동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구성 (추천 + 공모)	・동장 주관 2~30인 예산실무협의회 성격 ・분과구성 - 분야별 자율구성 (예시:기획주민 자치도시 등 ・간사(행정팀장), 서기	각급 단체장, 시민단체, 지역 대표, 일반구민 등 자율 구성 (일반구민은 공개모집) 예산 전과정 실무사무 진행 사업발굴, 의견수렴, 심사· 자문 등 수행	
	3. 제안사업 공개모집	・제안사업 공개모집 ・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신규사업 발굴		
제안 수렴	4. 숙의·공론 과정 이행	·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수시 개최 (세부사업계획 수립)	·실링예산 단위사업 배분 ·사업공모 및 접수방법 ·주민홍보 방법 등 결정	
		· 주요사업 또는 민감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공론화 과정 이행	· 공청회, 간담회,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민총회에 부의	

추 진 과 제		운영 개 요		
	5. 사업부서 검토 및 컨설팅	・부서(적합/부적합)검토	· 부서와 사업예산액 및 진행 세부사항 협의	
	6. 주민총회 투표 예산(안) 작성	·실링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와 사업예산 으로 구분 편성	• 필수경비는 최우선 편성 • 일반사업은 주민투표 선정	
심의 · 결정	7. 주민총회 구성	• 통반장, 각급단체 회원 등 공개모집 ※ 최소 500명 이상	· 공청회. 간담회, 설문조사 등에 참여 · 주민의견수렴	
	8. 제안사업 선정 주민총회 투표	· 주민총회+온라인 병행 · 사업우선순위 선정 · 동 우선편성 예산안 확정	・총 100점 - 주민총회 투표 50점 - 홈페이지 투표 50점	
	9. 동예산(안) 확정 제출	・區민관협의회 제출	• 2019년 본예산(추경)편성	
예산 편성	10. 보조금 심의	•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건 사전절차 이행		
	11. 구의회 제출	• 의회 심사를 거쳐 참여예산 최종 확정		
사업 시행	12. 참여사업 시행	• 제안자는 "민간 공사감독관"으로 위촉		
제도정착 기여 유공자 선정		 동행정에 대한 "구 자체평가' 지표 산입 (참여사업실적, 주민총회인원 등 지표개발) 유공 공무원 선발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유공 구민 선발 표창 우수 동 "상사업비" 배정 (포괄실링 활용) 		

Ⅵ 세부 추진계획

1. 제도정비(준비) 단계

□ 시행시기 및 방법

- 법률 시행 전 시범 운영 (2019년 본예산) ⇒ 시범운영을 통안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 ※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: 국무회의(8월), 공포(9월), 시행 ('19년)
- 연수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본격 시행 ('19년 추경)
 - ⇒ 동 주민총회 거친 사업 우선순위별 실링 내에서 예산 반영

□ 주민참여예산 실링 편성

○ 2019년 예산 총 실링금액: 주민세(재산·종업원분) 전액 95억원(2017년 징수액)

※ 동 포괄실링은 참여예산 사업 중 다년도 또는 여러 동에 걸친 광역사업 재원

- 주민이 납부한 세금 전액을 주민자치재원으로 환원하여 주민자치사업, 생활불편 해소, 문화·예술행사 등으로 사용
- 1차) 시범운영(본예산) : 각 동 실링예산 1억원
- → 동 포괄실링(24.5억) 한도 내에서 다년도 광역사업 추가 제안 가능
- 2차) 전면시행('19 추경): 42억 예정(본예산 실링에서 남은금액 포함예정)

□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임시) 구성

○ 위촉기간 : '19 본예산편성을 위한 시범 운영기간 (한시 운영)

※ 추후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정식 위촉

○ **위촉인원** : 2~30인 (주관, 협의회장) : 동장)

※ 제도 초기, 동장이 (임시)위원장직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정착기반 조성

- 신청자격
 - 인천광역시 연수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-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
- 구 관할지역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

○ 선정방법 : 추천 + 공개모집

- 각급단체장, 시민단체, 지역대표, 일반구민(공개모집) 등 자율구성
- 동장 추천과 일반 구민 대상의 공개공모를 통하여 선정 (신청자 미달시 동장 추천으로 대체 가능)
- 성별·연령별·지역별(아파트 동대표 등)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구성
- 재정, 에산 등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
- 장애인, 다문화가족, 취약계층 등도 우대

○ 운영방법

- 분과구성 : 분야별 필요에 따른 자율 구성 (기획주민, 자치도시분과 등)
-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,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(행정팀장)과 서기(동 주민센터 직원)를 둠.
-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,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
- 회의 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을 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

○ 주요기능

-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, 마을자치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
- 동 참여예산의 편성과 집행, 제안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
- 수렴된 제안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- 기타, 주요한 재정운용에 관한 방향 설정 등

2. 제안수렴 단계

□ 숙의·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

-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수시 개최 및 자체 계획 수립
- 실링예산 단위사업 배분, 사업공모 및 접수방법, 주민홍보 방법 등 결정
- 구정 업무보고회 시 지역주민 건의사항 집중 수렴하여 제안사업 발굴
- 지역의 숙원사업이 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상시 모니터링
- 주요사업 또는 민감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공론화 과정 이행
- 공청회, 간담회,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민총회에 부의

□ 제안사업 공개모집

○ 모집기간 : 예산협의회에서 주민총회 상정 전까지 모집 ※ 연중 수시 접수하여 마감 이후 접수 분은 다음 예산으로 이월

○ 참여대상 : 연수구 주민 누구나

○ 동 제안사업의 범위

- 해당 동 지역에서 시행 가능 한 사업

-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

-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

○ 참여방법

- 구 홈페이지(동 제안사업 표시) 및 주민센터 방문, 위원회 제출 등

□ 제안사업 부서 검토

○ 검토부서 : 제안사업 분야 소관부서

○ 검토방법 : 제안사업 제안단계부터 부서와 협의

○ 검토사항

- 법령 저촉여부, 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의견제시

- 적정 사업규모 및 사업비 조정 등 제안자와 의견소통으로 사업 구체화

동 검토사업(동 예산편성)	구 검토사업 (부서 예산편성)	
	-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사업	
- 필수경비(홍보 등)	(주민안전, 문화·체육, 건강, 건설, 환경,	
- 숙의·공론화 과정 경비	휴게시설 설치 등)	
※ 주민총회 행사 개최 등	- 구 단위의 사업발주가 필요한 사업	
- 동 직접 시행 소규모 시설사업 등	→ 부서 예산에 편성 후 주민참여제안사업 표시	
→ 상한액 제시예정 및 예산부서와 미리 협의	→ 민간감독자 선정하여 사업 진행 확인	
	(제안자 우선선정, 거부시 위원회 선정)	

※ 사업부서에서는 검토의뢰 받은 경우 구 자체사업에 준하는 공사비 산출 등을 고려하여 계획서 보완 후 통보

3. 심의 · 결정 단계

□ 동 주민총회 개최

○ 개최기간 : '19. 10월 중

○ 참석대상 : 통반장, 각급단체회원, 일반주민 등 공개모집 **※ 최소 500명 이상**

- 동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에서 자율구성

- 일부는 공개모집하되 미달 시 동장·단체장 추천으로 구성

○ 주요기능

- 참여사업 제안마당 행사/ 주민투표 축제의 장 개최 (총회 2회 개최)

-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

※ 필요시 공청회· 주민총회(투표) 설명회 진행

□ 주민투표

○ 투표방법 : 주민총회+온라인 병행

○ 장 소 : 동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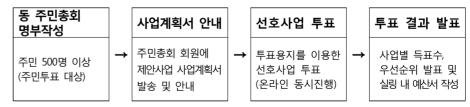
○ 대상사업 :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사업

○ 기 능 : 사업우선순위 최종 결정 및 동 참여예산안 확정

○ 산정방식 : 총 100점 (주민투표 50점 + 온라인 투표 50점)

※ 온라인투표: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광장 이용(홈페이지에 링크 및 배너제작)

○ 진행방법



Ⅶ 실링예산 배분(안)

□ 운영 방향

- '19년도 동 주요사업에 대하여 한도배분 기준을 정하고자 함→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권한 부여
- 동별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배분 기준 수립
-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고, 동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"재정분권화"의 중요한 촉매 역할 기대

□ 기본원칙

- 동별 편차해소를 위해 기준액 산정 후 가중치 부여 (단, 제도정착 이전인 '19 본 예산에서는 동별 균등 배분액 적용)
-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"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"에 따라 편성
- 지역문화 행사비(소규모 문화행사 및 축제 행사비)는 제외
- ※ 단, 동 자치계획성 주민참여예산 시행에 필요한 행사성 경비는 포함 (한도 제한)
- 동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구 사업부서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, 구의 관련사 업 예산은 차감하여 편성

□ 편성기준

편성 내용	편성 예산	편성	비고
· 1억이상 주민 숙원사업	동 포괄 실링 사업	구	
· 소규모 숙원사업, 생활불편 해소 · 공공시설 유지 관리 · 환경개선 사업 등	동 실링 예산	구 또는 동	
· 제도 시행 "필수경비"	동 실링 예산	동	
· 참여예산 시행을 위한 행사성 경비	동 실링 예산	동	한도제한

Ⅷ 행정사항

- 각 동 주민센터 : 세부시행계획 수립계획서 수립 제출(9. 13.한)
- 전부서 : 동에서 주민제안사업 검토 의뢰 시
 - 사업물량, 사업예산 산출, 사업계획서 보완, 법령위배 여부 등 확인
 - 부서 직접사업에 준하여 검토 보완 후 회신
- 주민참여예산 운영 홍보 : 홍보미디어실
- 구정 홍보 전광판(구청, 문학경기장) 홍보 : 안전총괄실

붙임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서식 8부.

※ 작성자 현황

부 서	직위(급)	성 명	연락처
	기획예산실장	심철보	032-749-7070
기획예산실	예산팀장	배종욱	032-749-7091
	담당자	신정원	032-749-7095